

우리나라의 언론피해구제측도 -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서정우

연세대 신방과 교수

언론피해구제의 첫번째 의의는 언론으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게 하는 데 있다. 언론이란 국민이 국민적 필요성을 위해서 창안한 국민적 기관이다. 그래서 언론은 「국민의 봉사기관」 혹은 「국민의 신탁기관」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국민의 하위개념으로서 수용자가 존재한다. 신문의 경우에는 독자가 되고 방송의 경우에는 시청자가 된다. 비슷한 차원에서 언론은 수용자를 떠나서는 존립하고 발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언론의 제자리는 인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수용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탁된 기관임에 있다. 언론피해구제란 언론보도에 의해서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언론은 국민의 신탁된 봉사기관으로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구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언론피해구제의 두번째 의의는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언론의 주체로서의 제자리를 찾게 하는데 있다. 국민은 언론의 주체로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고, 언론은 국민의 신탁된 봉사기관으로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줄 의무를 진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언론피해구제제도로는 직접적인 구제제도와 간접적인 구제제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직접적인 피해구제제도는 사법심판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정기구의 중재에 의한 구제제도 등을 포괄하고, 간접적인 피해구제제도는 윤리기구에 의한 구제제도, 시민단체에 의한 구제제도, 그리고 언론사에 의한 자율구제 제도 등을 포괄한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의 침해, 피의자 초상권 침해, 저작권의 침해,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소년 보호권의 침해 등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침해되는 인권은 명예보호의 권리라고 평가된다.

인권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는 모두가 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제 1의 자유)로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 자유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언론자유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규정한대로 국가안전의 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언론자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인권과 갈등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사법적 판단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판단은 선진국의 판례인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이나 「이익교량의 원칙」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사법심판에 의한 직접적 피해구제는 형사상 피해구제와 민사상 피해구제를 포괄한다. 형사상 피해구제는 사회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데 반하여 민사상

피해구제는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형사상 피해구제의 경우 범죄성립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여 그 사회성이 문제가 되는데 반하여 민사상 피해구제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재산상 또는 명예상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며 형벌이 아니라 금전적 배상 또는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직접적인 피해구제제도로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다. 법이 규정한 중재위원회의 목적은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다.

간접적인 피해구제로서는 각종 윤리위원회에 의한 구제, 시민단체에 의한 구제, 그리고 언론사에 의한 자율구제 등이 있다.

간접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로는 가톨릭 매스컴 위원회와 같은 종교단체, 언론학회와 같은 학술단체, 방송비평 회와 같은 전문가단체, YMCA 와 같은 소비자단체, 대한부인회와 같은 여성단체 등이 있다.

언론사에 의한 자율구제는 언론사의 심의기능, 옴부즈맨제도, 시청자위원회, 독자투고, 불만처리위원회 등이 있다. 그리고 언론사는 자체의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피해구제를 위한 자율적 구제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언론피해구제의 문제는 법의 문제에서부터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 문화의 문제, 윤리기구의 문제, 언론의 문제, 시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만을 포괄적으로 제시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사회는 인권에 대한 법적 보장의 후진성을 안고 있다.

둘째, 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윤리위원회의 윤리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

넷째, 언론에 의한 자율구제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다섯째, 국민의 인권의식과 수용자의 주권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또한 미분화되어 있다.

언론피해구제의 일차적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 언론사는 인권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인권피해를 구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의 신탁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피해구제의 개선방향은 우선 언론사의 구제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언론사는 우선 언론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몇 가지 가능한 사전장치를 제시하면 ① 현행 보도 관행과 시각의 개선 ② 보도의 전문성 제고 ③ 데스크 기능의 강화 ④ 법률담당 편집고문제도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예방장치와 더불어 언론사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사후 구제 하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의 사후장치로는 ① 옴부즈맨제도의 운영 ② 독자부의 확대 운영 ③ 정정노력과 중재합의 노력의 강화 등이 있으며 이와 아울러 기자와 언론사 모두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지는 책임의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① 법적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②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을 강화하며 ③ 각종 윤리위원회의 윤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기구를 재정비하고, 수용자는 언론의 주인이라는 수용자 주권의식을 확산해야 한다.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의의는 언론이나 시민으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게 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언론피해구제의 현주소는 극히 후진적인 상태에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은 언론사의 자율적 구제노력의 강화, 법적 보장의 재정비, 그리고 수용자운동의 확산에 있다.

국민의 수준만한 정부가 존재하고, 수용자의 수준만한 언론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국민의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하고, 수용자의 수준이 언론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의 피해구제문제의 열쇠는 결국 국민과 수용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